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64
----------	-----

제출연월일 : 2009. 4. 2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 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 다.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9. 3. 20. ~ 2009. 4. 10.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급 내지 9급”을 “1급부터 9급”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호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 (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63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3조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외국인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